



연금저축 가입 현황과 맞춤형 세제 지원 필요성

정원석 연구위원

- 최근 연금저축 납입액, 적립금 수령 형태 및 금액 등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음. 그 특징을 요약하면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월평균 28만 원으로 적고 수령기간 역시 6.4년으로 짧아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함. 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연금저축 적립금 규모가 작기 때문으로 풀이됨. 따라서 연금저축에 충분한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령 및 연금저축 납입의사 등을 고려한, 가입자에 특화된 연금저축 세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연금저축 납입액, 적립금 및 수령 형태 등에 관한 현황이 발표되었음.¹⁾

- 발표 자료에는 연금저축 계약건수, 납입액, 적립금 수령 형태 및 금액 그리고 연금저축 총 적립금 규모 등이 수록·분석되어 있음.
- 납입자의 연평균 납입금액은 327만 원²⁾,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28만 원, 그리고 수령기간은 평균 6.4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적은 수준의 월 수령액, 짧은 연금수령기간 등으로 인해 연금저축이 국민 노후소득보장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수령 형태로는 확정기간 연금수령이 57.3%, 종신행이 33.9%, 기타 1.7%로 발표됨.
 - 확정기간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 비중이 높고 평균 수령기간이 6.4년에 불과함.
-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연금은 월평균 61만 원 수준이며, 이는 1인 기준 노후생활비 99만 원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10. 18),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 원, 최소 노후생활비의 28% 수준에 불과”.

2) 납입기간 종료 등으로 인한 납입금액이 0원인 자를 제외함.

■ 이처럼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기간이 짧고, 수령금액 수준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연금저축 적립금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연금수령자 대부분은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최소 기간인 5년³⁾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율 3~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반면,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세율 15%의 기타소득세로 과세됨.
 - 가입자들은 일시금을 수령하고 싶지만 고율의 기타소득 과세를 피하기 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인 5년 확정기간형 연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연금저축 적립금액이 적으면 이를 긴 기간 동안 수령할 경우 월 수령액이 매우 작아짐.
 - 만약, 현재 적립금으로 5년간 매월 21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면, 이를 15년간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이 매월 7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므로 긴 기간 동안 수령할 유인이 적어짐.
 -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적립금이 적을수록 연금보다는 일시금을 선호하는 현상은 퇴직연금의 수령방법 선택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됨.⁴⁾

■ 따라서 연금저축이 노후소득보장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납입의사 및 납입여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납입유인 제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액은 세제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⁵⁾ 가입자의 연령과 소득에 특화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면 연금저축 납입액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40대와 50대는 노후소득준비를 위한 노력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며⁶⁾ 생애주기상 소득 역시 가장 높은 시기임.⁷⁾
 - 따라서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적립금 확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미국은 2001년부터 5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Catch up plan을 도입하여, 해당 연령층의 사적연금 납입액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kiri

3) 2013년 3월 이후 가입 권은 연금수령 인정을 위한 최소 수령기간이 10년이지만, 2013년 이후 가입자의 최소 납입기간이 10년이므로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 중 2013년 이후 가입자는 없음.

4) 정원석(2015), 「사적연금 세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연금정책 세미나』, 발표자료.

5) 정원석·강성호(2016), 「IRP 납입한도 상향에 따른 효과분석」, 『보험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

6) 보험연구원(2016),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7) 통계청(2016), “가구주 연령계층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 KOSIS 통계표.